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3. 22 선고 2022가단1046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장석철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3.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1,912,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민사 소송 경과

- 1)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소86731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9. 2. 4. 위 법원은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9. 2. 7. 확정되었다.
-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6109호로 1,000만 원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3.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9. 4. 2. 확정되었다.
- 3)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1975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17.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9. 6.부터 1998.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6383호)은 2019. 11.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C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9다38628호)은 2020. 2. 27.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및 주점 취득 등

- 1) 피고는 2002. 1. 22. 부천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22.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C은 2019. 5. 2. 피고에게 E(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영업허가를 양도하였다.
- 3) 피고와 C은 2019. 6. 14. 협의이혼하였다.

다. 원고의 강제집행 및 고소 경위

- 1) 원고는 2019. 5. 8.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2019. 6. 4. 이 사건 주점의 강제집행 과정에 참석하여 이 사건 주점의 양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명의로 은닉하고, 이 사건 주점을 허위양도하고, 딸 F의 명의로 벤츠 차량을 은닉하고, 소나타 차량을 불상인에게 허위매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검사는 2021. 2. 7. 이 사건 건물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차량에 관한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주점에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만 강제집행면탈죄로 구약식 하였다.
- 4) C은 2021.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약152호로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5) 이에 C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정62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2. 7. 20.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13, 14,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한 후 직접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주점도 피고에게 양도하여 이를 은닉하고, 피고와 가장 이혼하였다. 피고는 C의 이 사건 주점에 있는 노래방 기기 등 유체동산시설 및 집기비품 1,000만 원 상당을 은닉하였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2016. 5. 11.부터 2019. 5.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익금 25,621,500원을 입금하였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대출금 및 이익금으로 딸인 F에게 67,215,984원, 딸 G에게 9,601,000원을 입금하여 피고 및 F, G에게 합계 102,438,484원을 은닉하였다. 위 각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은닉에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은닉한 금원 중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금 10,000,000원 및 1991. 10. 25.부터 2022. 3. 27.까지의 지연이자 61,912,328원 합계 71,912,32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청구취지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누락되어 있는바, 위 청구취지에 의하면, 결국 원고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만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기는 하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주점의 영업허가 양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9. 6. 4. 이 사건 주점에 강제집행할 때 동행하여 그 명의가 피고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20. 5. 1. 강제집행면탈죄로 C을 고소하였다는 것이며, 고소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이 C의 유일한 재산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점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 도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또한 원고는 C이 피고나 피고의 딸에게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입금일은 2016. 5. 11.부터 2019. 5. 10.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입금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5년이 경과한 입금행위는 그 행위가 증여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부가적으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은 피고인데, 피고가 아닌 피고의 딸들에게 입금한 내역을 피고에게 구하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입금행위는 피고와 C이 이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입금행위를 생활비나 기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모두 ‘증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의 서면에는 원고는 C이 이 사건 건물 및 주점이 사실상 C의 소유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C의 강제집행면탈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주장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이 선택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주점의 영업양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로서, 위 각 주장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그와 같이 선택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윤아영